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

-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심사제도 개선 및 판매채널 다양화, 보험사의 겸영업무 확대 등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안을 마련함.
  -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,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확인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함.
- 본 개정안을 통해 자율상품 제도를 도입, 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모두 자율상품화하는 Negative방식을 운영할 예정임.
  - 동 조치로 상품개발 자율화에 대응하는 집중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부검증 시스템을 구축, 사후 제재조치 강화 등과 같은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함.
- 자산운용규제 방식에 있어서는 자회사 소유규제 및 파생상품의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 내에서 유형(업무시설용, 투자사업용)에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함.
- 보험회사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금융겸업화 대응 및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투자자문·일임업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함.
  - 아울러 보험수리, 보험사고 조사업무 등과 같은 부수업무의 허용범위에 있어서도 기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임.
- 기타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 협상권을 보유한 보험판매

전문회사 제도가 신설되고,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의 공시사항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함.

- 기타 판매채널에 있어서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,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, 설계사 교육 의무, 모집사용인·보험설계사 통합 등이 마련됨.
- 손해사정사 자격에 있어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종목별 1종에서 4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통합형 자격제도(재물손해사정사, 신체손해사정사)를 추가할 방침임.

□ 아울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보호장치 등 보험업법 규정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보험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.

□ 본 개정 법안은 2008년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.

(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, 금융감독원 보험과, 11/4)